

제1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2. 27(금), 14:00~14:45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평의원, 유승화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최인규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박상호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4명)

4. 회의안건(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열대학연구소 신설에 따른 기구표 개정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권고사항에 따른 학위기 명칭 개정
- 「학생군사교육실시령(2007.4.12. 대통령령 제20003호)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2007.6.22. 국방부령 제629호)에 의거 하여 학군후보생의 초과학점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졸업연기 신청기간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에 의거하여 선발 및 등록인원, 선발대상 및 전형자료 명시, 시간제등록생 적용 근거 마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2 조(학칙 등의 작성)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 반영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3항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 반영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2009.2.2(월) 회의에 이어 2월에 2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말씀하실

< 간서명란 >

의장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9차 회의록 마지막 (서명지 바로 앞) 페이지를 보시면 의장님께서 ‘회의록은 모두 사인을 하시지만 회의록에 대한 사전 review를 하여 전 회의에서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롭게 refresh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록에 지적된 모든 것을 다음 회의에 follow-up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리 발언하신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진 평의원께서도 ‘다음번 회의를 할 때는 여기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이 제10차 평의원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평의원회는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결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내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평의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된 것이 없을뿐더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시행되면서는 정작 평의원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평의원회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심의안건도 학교에서 매우 급하다고 가지고 와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는 급하다고 와서 심의를 부탁하고, 정작 평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의견을 낸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의 대학 평의원회를 계속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지난번 우리가 모였을 때 꼭 우리가 지적해서 follow-up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원희 부의장님께서 제9차 회의에서 마지막에 발언하신 부분에서 거의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교내에 상설되어 있는 규정류조정위원회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잘 정리해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규정류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해서 잘 전달이 되는지 좀 더 연구검토한 결과가 다시 피드백되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원래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잘 이행되어서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없을 경우에는 법은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간서명 란 >

의장



지금 여기서 교육과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얼마 든지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에서도 우리가 얘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서 작성되어 어떻게 follow-up 되고 있고, 다시 다음 번 회의에는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나하는 경과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 검토 결과를 어떻게 follow-up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지만, 결국 이사회에서 예산을 보고하고 심의할 때 평의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보고하고 심의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다 무시되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평의원회의 예산 검토 결과가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고 없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평의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예·결산을 검토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기획처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획처장님께서 평의원회 회의록을 주의깊게 보시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회의록이 방대하게 18장이나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다 보면서 follow-up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류 관계를 비롯하여 지난 번 회의에서 나온 모든 지적 및 논의 결과에 대한 follow-up이 어떻게, 어디서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원래 지난번 회의에서 전차 회의록을 읽고 진행하는 걸로 하였는데, 지난번 회의록은 분량이 상당히 많지만 follow-up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회의록 앞에서부터 체크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지난 회의 결과의 follow-up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다 가지고 계시는 제274차 이사회 회의록 24페이지를 보시면, 제15호 안전이 200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제16호 안전이 200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안)이나 예산에 대하여 자문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기획처장님께 해명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평의원회가 힘들여서 예산안들을 검토하고 여기서 몇 번씩 발표회를 한 까닭이 무엇

< 간서명란 >

의장



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번 결산서 자문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평의원회의 자문 결과가 이사회에 전달되는 방안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의원회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서 검토의견을 개진한다던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몇 번째 결산안과 추경 및 본 예산안 검토를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이 요식행위라면, 사실 대학평의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학평의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간다면 모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평의원회가 안모여도 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학생회에서라도 제안이 있어 모이게 되었으며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모일 필요가 없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일 평의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한 자도 이사회 회의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괜히 모여서 우리끼리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의원 유승익 : 질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획처장님과 총장님께 전혀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간사 이중한 :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경험으로 보면 보통 법인 이사회에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사전에 법인 감사님에게 설명하고 감사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후 안건으로 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이사회에는 예산(안)이 사전 검토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아주대학교, 병원, 아주자동차대학 3개 대학의 안건을 한꺼번에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조정과 조율이 끝난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무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의원회 회의록처럼 자세히 적고는 있지 않습니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교무회의 자료에 첨부하게 되어 있고 법인이사회 및 교과부에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무회의 때는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총장님께서 평의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항상 물으시고 기획처장님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은 법인이사회가 예·결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예·결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는 것이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결과를 그 전 단계에서 덮어버리면 실효가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예·결산안을 검토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안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내용이 이사회에서 이야

< 간서명란 >

의장



기 되어야지, 그 전 단계에서 듣고서 다 덮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중 제18호 2009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의 이영현이사 발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수입예산을 설명하면서 ‘예금이자 수입은 자금운영이자수입으로 2009 회계연도 운영자금 기준 6% 수익률을 반영하면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으로 편성’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 6%로 이자수입이 28억원이라면 운용자금이 최소한도 467억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하거나 토지구입비를 모두 부담하지 못하는 것을 재단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오셨으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이 충당한 법정부담금이 74억원, 토지매입비가 36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은 금액(토지 매입,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누적기록을 남겨서 추후에 법인 재정현황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자문을 받으셨으면 기획처장님과 총장님이 이사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와서 그것을 저희에게 전달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기록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교무회의에서는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요? 다만 이사회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그것은 제가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지만 과거 경험에 의하면 사전에 감사님이 검토해서 보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하고 이의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만 하지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논의사항은 별로 없었던 같고 첨부된 회의록에도 전혀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승익 평의원 : 이사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간사 이중한 :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이사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원회 회의록은 회의록 자체가 예산(안)이 상정될 때 하나의 요건이지 이사회에서 꼭 다루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순일 평의원 :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이 회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평의원회를 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교내에 필요한 의견들을 반영

< 간서명란 >

의장

하자는 것인데, 대학평의원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런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추경예산 검토과정 중에 큰 액수의 기금운영 수수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금운영이 상당한 액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금운용 상태는 어떠한지, 자금운용의 결과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자금운용의 결정은 누가 어떤 경로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본부 측에서는 답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25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기금운영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과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하겠다고 금방 대답을 하시면서, 똑같은 사항을 평의원회가 발견해서 질문했을 때는 답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기금인출에 대한 우려는 이사회에서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27페이지 윤성복 감사의 발언을 보시면 5번째 줄에 ‘종합관 신축 등을 위하여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인데 인출기금이 부족할 경우 학교에서 운용하는 자금 중 투자신탁 상품을 일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손실이 우려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의원회는 예금 이 외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금의 규모가 얼만지도 모르고, 누가 투자를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 질의하여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화 : 오늘 심의하는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오늘 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의장 이일영 : 나중에 교과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왜 평의원회 심의를 안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평의원 유승익 : 여기서 질의된 내용은 결국은 평의원회는 총장님께 자문을 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평의원회는 총장님에 대한 자문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총장님이라도 여기서 얘기된 것을 이사회에 가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시 평의원회에 답을 해주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원희 : 조금전 유승화 평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에서는 평의원회를 하

< 간서명 란 >

의장



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철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요식적·관행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대로 하면 하나마나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관두자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 취지에 맞춰서 가야하는데, 취지대로 관행이 만들어지는데 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이 그런 과도기인 것 같고...

의장 이일영 : 지난번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대학평의원회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김환균 : 총장님을 모시고 평의원회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의결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대하실 것인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장 이일영 : 결국은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전달이 되는 것이므로 총장님께 평의원회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학교의 모든 학사운영 및 일반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에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상반된 일이 벌어지면, 이전 평의원회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1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지난번에 대학평의원회에서의 학생회와 직원회 대표 관련하여 정관개정을 요청하였을 때 분명히 무슨 답을 들었느냐하면 이사회에 정관개정 요청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법인밖에 없다. 이사회 1주일 전에 안건이 통보되어야 하며, 법인에서 안건을 보내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장께서 현장발의를 통해 정관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발의를 하려면 모든 이사들이 참석해야만 가능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16페이지 제10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보시면 “신설된 교학부총장에는 제9호 의안에서 신규 임용 동의를 받은 박종구 교육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박종구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보직임명 동의(안) 안건이 1주일 전에 이사들에게 전달 됐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발의라면 모든 이사들이 출석 하여야 하는데, 3분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정상

< 간서명 란 >

의장



적인 구성을 요청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며, 특히 현장발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이번 회의록에는 이사장께서 현장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주일 전에 박종구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한다는 안건을 올리셨어야 하는데, 1주일 전에는 아주대학교에 박종구 교수님이 안계셨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원희 : 근데 2009.2.20(금)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박종구 교육대학원 교수가 있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9.2.20(금) 이사회에서 박종구 교수가 임용이 된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사들이 1주일전에 받은 안건에는 박종구 교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순일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의원 이원희 : 박종구 교수는 제가 교원인사발령을 보았는데 2009.3.1자로 교수입니다. 2009.2.20자는 교수가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현장발의가 안된다는 사유로 학생회와 직원회 대표 관련한 정관개정 요구를 북상하더니, 이번에는 현장발의로 처리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원희: 현장발의 뿐만 아니라 교수가 아닌 사람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이순일: 교수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원희: 교무가 교학이 되고 또 부총장이 누구를 하고...

의장 이일영: 이것은 우리 학칙의 큰 변화인데 교학이 교무가 되었죠. 다른 건 다하면서 이런건 빼고 이런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순일: 제274호 이사회 회의록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사(총장) 서문호라고 발언된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할 부총장에 관하여 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과 함께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부총장을 임명할 거면 교수들을 상대로 논의를 해야 되고 교수들의 대의기구는 당연히 교수회입니다. 그런데 부총장 임명을 교육대학원장과 상의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전공에선 임용대상자가 그 전공의 교수로서 임용하기에 적정한가를 심사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대

< 간서명란 >

의장



학원에서 부총장후보를 전제로 임용을 결정하고,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심사 절차 없이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을 결정하였다면, 이것은 아주대학교 교수임용절차의 큰 흔적이 됩니다. 총장께서 '부총장에 관하여여 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과 함께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학내구성원에게도 선임될 부총장은 대외협력업무만을 관장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하신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설명의 대상은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장께서 말씀하신 학내구성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의원 이원희 : fact에 관한 건데 학내구성원에게도 설명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할 예정이었죠. 학내구성원에게 한 것은 어제 그 젓께 수요일 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09.2.25(수) 12시 대의원회의와 14:30부터 진행한 이른바 확대대학운영회의에서 15분 동안 총장이 발언할 때 말미에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2009.2.20(금)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미 임용 및 보직 임명을 결심하고, 교수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평의원 이원희 : 다른 이사들이야 참석 안 해서 좋겠지만... 그것도 fact가 아니고...
의장 이일영 : 학내 구성원에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평의원 이원희 : 교수가 아닌 사람을 교수인 걸 전제로 해놓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에 관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임용은 대학교육의 가장 근원적 사항입니다. 만일 교수임용규칙을 학교가 엄격히 지키지 않고, 또한 교무부총장 임명이 대학평의원회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수들도 추후에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알게되는 이런 사태에서 평의원회에서 무었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조금전 제안하신 데로 우리 근일내로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논의드리고 오늘은 휴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규 회장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제가 주장해서 모인 자리인 것 같은데 대학평의원회 역할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에서 학교에 어떤것을 요구할 때 학교에서 절차를 중요시 해서 막혔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운영규칙 등 여러부분에서 계속하는 말이 절차가 있다. 회의를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정작

< 간서명란 >

의장



바쁜 학칙개정을 요청하면서 서면동의를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생대표가 되면서 학교절차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발언할 수 있는 곳은 대학평의원회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무회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자리에서 제시된 안전 뿐만 아니라 학생회에서 생각하는 다른 안전을 발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계속주장했던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입부분에 등록금 의존률이 높다는 부분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꾸준히 기획처장님 뿐만 아니라 총장님과 대학평의원회 등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더불어 이순일 교수님도 같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일언반구도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면동의 과정이 좀 관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회의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학칙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상위법령에 있는 모든 법령을 아주대학교가 심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상황에 맞게 좀 더 논의하여야 하고 전 학생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학칙이 개정되었을 때 우리학생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꾸준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이 이사회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혹은 총장님께 직접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면 내용들을 총장님께 직접적으로 자문하고 같이 토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청하는 부분은 회의록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상정된 안전이 있지만 총장님을 모시고 근일 내에 평의원회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오늘 평의원회에서의 제안안전 심의는 유예하자는 동의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총장님을 일정이 허용하는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오늘회의는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평의원 만장일치 동의에 의하여 제10차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다음차 회의로 심의를 유예하기로 하다.)

< 간서명란 >

의장



2009년 02월 27일

의장 이일영

부의장 이원희

평의원 유승화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최인규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박윤규

간사 이중한

기록 진성호